

사전자산배분기준

제정일자	2019. 12. 06	
개정일자	2022. 04. 28	



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한다) 제80조 제 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(이하 '영'이라한다) 제79조 제2항에 따른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·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 절차 없이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.

제3조(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)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각 신탁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어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다.

- 1. "펀드" 라 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- 2. "사전자산배분"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·처분하는 경우 펀드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운용담당자"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- 4. "매매담당자"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- 5. "정보통신수단"이라 함은 전화, 전자우편,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·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.
- 6. "당일 발행자산"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,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.



- 7. "종목코드주문"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 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.
- 8. "텍스트주문"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.

제2장 사전자산배분

제5조(자산배분 원칙) ① 회사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 우선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고 취득·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.

- ② 하나 또는 다수의 펀드에서 다른 시간에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분한 자산은 주문접수시간 순서대로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정한 펀드에 배분하여야 한다.
- ③ 다수의 펀드에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문번호로 매매주문을 하여 취득 처분한 자산은 그 다수의 펀드에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
- ④ 실제 취득 처분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가 미리 정한 펀드 별 주문수량을 기초로 동일한 시간에 주문한 다수의 펀드 간에 수량을 안분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담당자가 펀드 별 배분 우선순위 또는 비율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 또는 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- ⑤ 운용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펀드 별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제6조(자산배분시스템)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편드별로 종목, 주문금액 가격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 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

- ② 매매담당부서장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매매담당부서장은 각 운용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펀드 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 기록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장 매매주문서의 작성과 집행 및 자산배분내역서 작성

제7조(매매주문서의 작성)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,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.
- ③ 운용담당자는 제 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적합한 주문방식(종목코드주문, 텍스트주문, 텍스트주문과 종목 코드주문의 병행 등)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.
- ④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사전자산배분의 정정) ① 회사는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,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·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·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운용담당자는 제 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 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



한다.

제9조(유동자금 운용의 특례) ① 회사는 콜, RP 및 유동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수단(유동성 관련 ETF 등)을 통해 투자신탁별 유동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.

-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, RP 시장 및 유동성 운용수단의 특성,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, RP거래 또는 유동성 관련 ETF 등의 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,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1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.

제10조(당일 발행자산의 특례)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.

-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.
-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.

제10조의 2(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)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펀드별로 매매계좌를 분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2. 04. 28>

제4장 운용과 매매의 분리

제11조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) ① 제2조에 정하는 자산에 대해 운용을



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실행하는 직원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규칙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·처분 등을 하는 경우
- 2.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
- 3.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
- 4.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팀 운영 등 조직분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회사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용담당자의 업무) ①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(이하 "투자중개업자 등" 이라 한다)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정보(명칭, 가격, 수량, 시장동향 등)의 수신 및 단순 문의를 할 수 있다.

- ②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투자중개업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
 - 2.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
 - 3.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·가격을 협의(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

제13조(매매담당자의 업무) ①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내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


제14조(준법감시부서의 감시)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공시)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04. 28>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지침은 2019년 12월 6일 부터 제정·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지침은 2022년 4월 28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